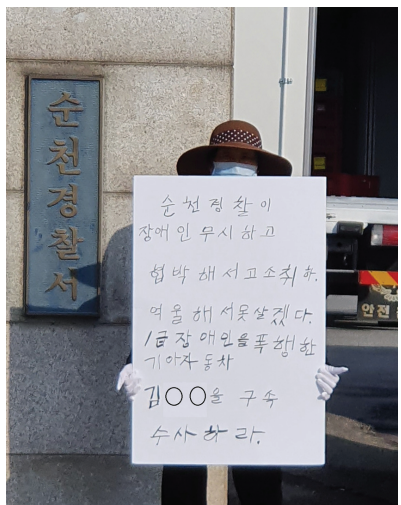


# 80대 할머니 “편파수사, 너무 억울해”



### 순천 모 교회 집사 부부에 장애인 딸 폭행당해 “수차례 고소 취하 중용”...경찰 봐주기식 의혹

“경찰이 힘 없는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편파수사를 해서, 너무나 억울해요.”

13일 오전 8시 20분 전남 순천경찰서 정문 앞에 80대 할머니가 홀로 피켓을 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 할머니는 한시간 넘게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눈물을 흘렸다. 당분간 경찰 수사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것.

할머니는 1급 정신지체장애인을 딸(64)로 두고 있는 양모(82·조례동)씨다. 양씨는 “지난 1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딸이 교회 집사인 김모(58·기아자동차 대리점 대표) 부부에게 ‘○○년’이라는 욕설과 함께 목걸이를 잡고 머리를 주먹으로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양씨는 지난달 27일 담당 경찰이 경찰서로 오라고 해 만난 자리에서 “고소를 취하하라”는 말을 서~너번 들었다고 했다.

경찰관이 “당신 딸이 김씨 부인의 핸드폰을 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명백한 폭행인 만큼 가해자도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수차례 화해하라는 말을 해 할 수 없이 고소를 취소했다”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딸이 ‘지금도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 힘든데도 사과 한 마디 없어 죽고 싶다’는 말을 되풀이 해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 취하장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순천경찰서는 고소 취하장을 근거로 지난 1일 검찰에 불기소처분을 했고, 검찰도 지난 7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의 봐주기식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폭행은 반의사불법죄로 고소 취하장이 들어오면 수사를 종결하지만, 상해죄는 고소 취하에 상관 없이 끝까지 수사를 끝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양씨는 진단서를 제출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로 수사를 해야하는데도 경찰은 단순 폭행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또 경찰 조사결과 김씨 부부는 2~3회 출석 연기를 한 후인 지난달 26일 부인 이모씨만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 양씨가 제출한 동영상에서 주먹으로 뒷 머리를 세게 치는 모습이 나오자 시인을 해 거짓말이 드러났다.

양씨 딸은 머리를 맞고 상반신이 앞으로 고꾸러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정상적 절차면 이후 경찰은 모욕과 상해혐의로 고소를 당한 김씨를 불러 조사를 해야하는데도 오히려 양씨와 딸을 불러 합의 중용을 한 것으로 알려져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며, 김씨는 조사 자체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특히 양씨 딸은 1급 정신지체장애인인 심신장애인이어서 형법 10조 ‘심신장애로 인한 행위는 처벌

을 하지 않거나 감경 받는다’는 조항처럼 엄격한 법 적용이 제외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은 양씨에게 “많은 벌금이 나온다. 무고죄로 더 크게 처벌받는다”는 얘기를 한 후 고소취하장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양씨는 “김씨가 딸에게 욕설을 하고 목걸이를 잡는 행위를 본 목격자도 많다”고 원통해 했다.

경찰서 앞의 피켓시위를 봤다는 김모(58·용당동)씨는 “피켓에 써져 있는 기아자동차 김모 대표는 순천에서 시의원 출마도 하고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인데 경찰이 힘 있는 사람 편에서 편의를 봐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며 “이유야 어찌됐든 수사기관이 장애인 인권을 중시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담당 경찰은 “합의 중용을 말 한적이 없고,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자 양씨가 고소를 취소했다”며 “그분들이 문맹인이어서 취하 형식의 내용을 불러줘 작성하도록 도와줬다”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양씨 딸 사건이 정상적인 절차로 끝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 단신 ●

### “왜 열을 재”...투표용지 찢고 직원 협박한 40대

광주지역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40대 유권자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협박 등을 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4.15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오전 6시10분쯤 광주 북구 두암3동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투표할 한 뒤 투표용지를 반으로 찢어 절반은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는 찢어 바닥에 버렸다.

이에 선관위 직원은 A씨를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조사실로 데려가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투표용지 훼손 이유를 묻는 선관위 직원에게 “너희 가족 죽여버리겠다”는 폭언을 하며 소화를 들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조사를 하던 선관위 직원은 A씨에게서 술냄새가 조금 낫다고 설명했다.

A씨는 투표에 앞서 발열체크와 함께 마스크를 벗고 신분을 확인한 것에 불만을 품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평소 두암3동 주민센터에서 잤던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A씨를 행정법으로 체포했으며, 선거 방해 사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구두 앞 구멍낸 뒤 스마트폰 넣어 몰카 시도 20대

광주 북부경찰서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35분쯤 광주 북구의 한 옷가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수가 큰 구두를 구해 가위로 구멍을 낸 뒤 구두 안에 스마트폰을 넣어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옷가게 여사장은 A씨가 접근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구멍 난 구두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이 발각돼 달아난 A씨는 추적을 피하고자 3km가량을 돌아다녔지만, 지난 6일 거주하는 원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대학교 휴학생으로 “호기심에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 응급실서 의사·간호사에 행패 50대 2심도 실행

전남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행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진만)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A씨에게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 형이 유지된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직접적인 유형력까지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A씨의 범행이 1시간 정도 이어져 응급의료업무에 대한 방해 정도가 상당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폭력 및 업무방해와 관련된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행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4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전 3시14분쯤 전남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간호사에게 욕설과 함께 “응급환자를 방치해 놓아도 되느냐”고 말했고, 의사에게는 “네가 의사냐 XXX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흡연하면 기형아 출산”...12월23일 담뱃갑 경고그림 · 문구 바뀐다

### 문구 ‘폐암 위험, 최대 26배’ 간결하게 변경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12종을 새롭게 확정해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세 개정안’을 오는 6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 고시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오는 12월 22일까지 사용한다. 3기 경고그림과 문구는 올해 12월 23일부터 2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금연정책전문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3기 경고그림 중 후두암과 성기능장애, 권련형 전자담배 3종은 기존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반면 폐암과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신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등 9종 그림은 새것으로 교체한다.

경고문구는 현행 구성을 유지하되, 담뱃갑 면적을 고려해 간결하게 바뀐다. 이에 따라 폐암 위험, 최대 26! 피우시겠습니까 라는 문구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 로 변경한다. 흡연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도 흡연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 으로 바뀐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 주제     | 현재안                       | 교제안                 |
|--------|---------------------------|---------------------|
| 간접흡연   | <br>어린이 흡연, 아이를 병들게 합니다.  | <br>당신의 흡연, 병드는 아이! |
| 임산부 흡연 | <br>흡연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 <br>흡연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 |

“2년간 새로 사용할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정했다”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NDP

## 인쇄전문기업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